

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규모 실증시험 수요가 증가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,
- 동일자율주행자동차 판단요건을 구체화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센서 기술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동일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(안 제2조제7호)
- 센서 등의 규격은 동등 이상이나 제작사 또는 모델 변경 시에도 동일자율주행자동차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 완화

나. 양산직전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 명문화(안 제6조제3항)

대규모 제작자\*가 양산계획을 갖춰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임시운행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출서류 명문화

\*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제작자 등

다.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건 대폭 완화(안 제6조제4항)

임시운행 허가실적 및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\* 현황 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건 대폭완화

\* 교통사고 발생 등의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7항에 따라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

라. 청각경고음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14조제2항)

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시스템 고장, 제어권 전환 요청시 작동하는 청각경고의 경우 경고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국토교통부(자율주행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(이유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
- 전화(☎) 044-201-4145 / 팩스 044-201-5587